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1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 . 9 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할수 있도록 기능직렬중 전기직 2명, 운전직 1명, 필기직 1명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정원조정 (안 제2조)
 - . 본 청 : 237 명 → 239 명
 - . 사업소 : 17 명 → 15 명

3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 청 : 239명
4. 사업소 : 15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의 본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본 청 : <u>237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 : 13명</p> <p>3. 직 속 기 관 : 140명</p> <p>4. 사 업 소 : <u>17명</u></p> <p>5. 읍 면 : 286명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본 청 : <u>239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사 업 소 : <u>15명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